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5일 오후5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17 건설인 신년연사회에 참석.

구매처·사용점 찾기도 힘든 강원상품권

강원상품권은 도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올해부터 발행한 일종의 지역화폐다.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연 4조원에 달해 상권이 붕괴되는 현실을 보다 못해 만들었다. 좋은 제도도 현장으로 가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 2일부터 시중에 유통돼 이틀 동안 도내에서 판매된 강원상품권은 120매, 236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본지 기자는 직접 강원상품권을 구매해 시장에서 써보며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 사기도 쉽지 않은 상품권=4일 오전 5만원을 들고 판매대행기관인 농협을 찾았다. 춘천시 중앙로의 시지부부터 찾아 2만원을 내밀었다.

창구에서 상품권을 갖고 나온 은행원에게 온누리상품권과의 차이를 물으니 "온누리는 현금 구매 시 5% 할인이 있지만 강원상품권은 없다"고 답했다.

소요시간은 10분 정도. 효자동, 약사동, 은의동, 퇴계동의 단위농협 지점을 찾아 "강원상품권 판매 계획을 못 들었고, 구매하려면 중앙회로 가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중앙로의 강원영업본부 창구에서 강원상품권을 찾으니 은행원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기자가 첫 고객이었던 것. 전산시스템 입력을 재차 확인하느라 20분이 걸렸고, 기자의 등 뒤로는 대기 고객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다.

■ 사용점 찾기도 현금 교환도 불편=1만원권 3장, 5,000원권 4장을 들고 중앙시장으로 향했다. 춘천의 사용점 125곳 중 가장 많이 몰려 있



◇이달부터 도내 지역화폐인 강원상품권이 본격적인 유통에 들어간 가운데 효용성을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4일 춘천 중앙시장에서 상인이 강원상품권을 물건 값으로 받고 있다. 박승선기자

이틀 판매액 236만원 미미
현금 구매 시 할인도 안 돼
상인 "현금화 귀찮아" 기피

는 곳이다. '강원상품권 사용업체' 알람판을 내건 가게를 찾을 수가 없었다. 명동의 한 옷가게는 문 입구에 붉은색 알람판을 붙여 놓았지만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다.

스마트폰으로 사용점을 검색하며 다니는데 마치 '지도 찾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사용점인 순댓국집에 들러 국밥 2그릇을 시키고 1만원권 한 장과 5,000원권 한 장을 내밀었다. 사장인 김금자(72)씨는 "나중에 현

"공사대금 7% 구매 보관 문제
농협 주거래 아니면 어려워"
건설·유통업계 걱정 토로

금으로 바꾸러 또 농협으로 가야 하는데, 시간도 없고 다리도 아프다"라며 "2천원은 현금으로 달라"고 말했다. 5,000원권은 그냥 지갑에 넣었다.

■ 건설업계·유통업계의 걱정= 지난해 12월14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이사회. 도가 경제인들에게 강원상품권 사용 확대 협조를 요청한 자리에서는 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

는 "공사대금의 7%를 강원상품권으로 구매하도록 권하는데, 수익원 되는 강원상품권을 보관하는 것도 문제고 자재업체, 식당 등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 아닐 경우, 구매 교환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말했다.

4일 취재에 동행한 20대 중반의 남자 수습기자에게 상품권을 주니 주머니에 넣었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해 지갑도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 디지털 결제에 익숙한 젊은 층들이 '지역경제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공감대'를 가지려면 길은 멀고 멀어 보였다.

신하림기자 peace@

경제인 동정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5일

오후 5시 서울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17 건설인 신년인
사회에 참석한다.

‘부실공사’ 법적제재 강화 설계·감리자도 형사처벌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3년이하 징역형’ 규정 신설
처벌 기간 ‘준공후→착공후’
‘건설기술공모제’도 폐지

부실공사를 조래한 설계·감리자와 허위 보고서를 쓴 감리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일부 지자체가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했다가 특혜 시비를 부른 ‘건설기술공모제’는 폐지된다. ▶관련기사 6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감리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신설했다.

우선 부실한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업체와 기술자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신설된다. 지금은 벌점·영업정지 등 행정처벌만 하고 있다.

감리보고서의 허위 작성, 주요 구조부 검사내용 누락 등에 따른 감리자의 업무정지 규정도 신설된다. 그동안 업체에만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감리자에 대해서도 최대 2년의 업무정지를 부과해 기술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사람 등 중대사고에 따른 설계·감리자의 처벌기간도 ‘준공후’에서 ‘착공 후’로 바뀌 건설공사 중 사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만들었다.

건설기술공모제가 폐지되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이 이를 대체한다. 건설기술공모제는 창의성이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95년 도입됐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협상,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면서 특혜시비 등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공모제는 국가계약법상 근거가 없고 운영상 문제가 발생해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신기술 협약제도의 근거와 기준도 담았다. 신기술 협약은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고 기술 전수를 받은 자에게도 개발자의 지위를 주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이 밖에도 정부·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협회 등의 임직원이 뇌물 등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김태형기자 kth@

감리보고서 허위작성 기술자 ‘최대 2년 업무정지’

뉴스 돋보기

부실공사 설계·감리자도 형사처벌

국토부가 4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설계·감리자의 책임과 역할 강화, 특혜시비에 휘말린 건설기술공모제 폐지로 요약된다.

특히 그동안 업체에만 부과됐던 행정처분을 감리(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도 부과한 것이 주목된다. 행정처분 강도도 업체(건설기술용역업자)보다 세다.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주요 구조부에 대한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는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업체가 최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과 비교된다. 이는 수도권과

속철도사업(수사-평택) 때 공사비 편취 및 감리원의 보고서 허위작성 사례가 적발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설계·감리업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조래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강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강해진다. 지금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때 수요예측 부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쳤을 때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노역을 시키지 않는 금고형이다. 나머지 부실공에 대해서선 벌점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만 부과하던 것을 벌칙으로 처벌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감리자의 업무 부실에 따른 벌칙 신설을 통해 기술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근절하는 효

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사업관리 원칙에 경계성·능률성 외에 안전성을 추가했다. 발주청과 설계·감리업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그만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기술공모 제도는 논란 끝에 폐지되

건설공사 사업관리 원칙에 경계·능률성, 안전성 추가

결론내렸다. 1995년 도입된 이 제도는 2010년 이후엔 연평균 2~3건 정도에 그칠 정도로 활용도가 낮다. 300억원 이하 공사 중 창의성이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을 공모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로 환경공사에 활용됐다. 문제는 건설기술진

흥에만 규정이 있고 국가계약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는 데다, 낙찰자 선정절차도 불명확해 특혜시비가 생겼다는 점이다. 기술공모의 경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와 방식은 유사하지만 국토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300억원 미만 공사도 턴키로 발주하려면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선 300억원 미만 공사를 턴키 대신 간편한 기술공모 방식으로 발주해서 문제가 됐다.

실제 지난해 3월 감사원은 전주시가 건설기술공모 방식으로 발주한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창의적이고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라고 특정한 공공·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일반 경쟁발주로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와 정치

권에서 건설기술공모제 폐지에 대한 반대가 있었지만 계약법령상 근거가 없고 오용의 여지가 커서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협회의 임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위탁사업기관 임직원들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 것이다. 지금은 공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의 임직원에 대해 부패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